

18대 대선 후보자에 대한 정책질의서

18대 대선 후보자에 대한 정책질의서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정책 질의서를 준비하였습니다. 대선 후보자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2012년 11월 15일까지 질의서에 답변해 주십시오. 귀하의 답변은 유권자들의 올바른 참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대 상 : 18대 대선 후보자
- 질의 내용 : 인간 존엄 및 생명권, 언론의 자유, 평화, 환경·에너지, 경제, 노동자 보호, 사회복지
- 질의서 발송 : 2012. 10. 15(월)
- 질의서 회수 : 2012. 11. 15(목)까지
- 질의서 답변 취합내용 발표 : 2012. 12. 3(월)
- 답변서 보낼 곳 :
 - 문의전화 : 02) 460-7622
 - 주 소 : 우편번호 143-912
 - 서울특별시 광진구 증곡1동 643-1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 이 메 일 : cjp@cbck.or.kr
 - 팩 스 : 02) 460-7629

■ 후보자 이름 : 문재인

■ 소속 정당 : 민주통합당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인간존엄, 생명권

1.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잇따르는 아동,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묻지마 범죄 등 흉악범죄의 증가에 대해 국민 한 사람으로서 저 역시 크게 분노하게 됩니다. 하지만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있어 사형제가 가장 적절한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형제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경우 과거 인혁당 사건과 같이 국가 권력이 무고한 개인 생명을 앗아가는 사례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한번 빼앗긴 생명을 되돌릴 방법이 없게 됩니다. 또 흉악범들이 사형이 예상될 경우 더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도 과거 막가파 범죄의 사례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앞서 밝힌 바 있듯 경찰인력의 대폭 증원, 지역별 주민 안전 시스템 구축하는 등 예방적 치안·민생 치안을 더욱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강력 범죄에 보다 더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지구상의 2/3 이상의 국가 (96개국)가 사형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거나 집행하지 않고 있으며, UN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에 걸친 연구 끝에 사형제도가 범죄 억지력이 없다는 것을 발표하였고 궁극적으로 전 세계의 사형제도 폐지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폭력과 극악범죄를 바로잡기 위해 보다 더 강한 형벌과 국민 통제 일변도의 정책만이 능사는 아니며 참혹한 범죄의 발생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의견을 모아 연구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을 시도하겠습니다. 폭력과 죽음의 악순환은 누군가가 먼저 멈추지 않는다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사형제도의 폐지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15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으로 사형 집행이 가장 많은 아시아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존엄성을 일깨우는 인권 선진국으로서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부여한 막중한 책임과 의무 또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국가보안법 제7조의 폐지 또는 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보안법은 인간 사상에 대한 검열, 행위 형법이 아닌 심정 형법의 문제, 모호한 범죄 구성 요건, 형사절차상 피의자의 권리 제한, 사회 전체의 공안적 분위기 조성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1998년 유엔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국가보안법이 유엔의 인권규약(자유권 규약 B규약 제19조) 위반 사실을 재확인하는 등 국제 인권규범과도 충돌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 인권이사회 등의 국가보안법 관련 권고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은 현행 형법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습니다. 초대 대법원장인 김병로 선생 역시 형법이 입법되면 국가보안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만일 폐지되지 않는다면 최소한 대폭 개정을 통하여 인권 침해적 요소는 제거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은 원래 취지였던 국가의 안보보다는 과거 독재정권들이 자신들의 정권 안보를 위해 형사법의 일반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완전히 어긋난 법 적용의 애매모호한 잣대로 온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초헌법적 월권을 누려왔습니다. 특히 가장 독소적이고 애매한 조항인 제 7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와 언론·출판·학문·예술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는 도구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므로 대표적 반민주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거나 폐지 하겠습니다.

3. ‘모자보건법 제14조의 폐지 또는 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모자보건법상 문제점을 검토하되 여성계 종교계 의료계 등의 사회적 합의를 거친 뒤 신중히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전하지 못한 낙태는 여성 건강에 매우 위험하고 미래 출산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이에 대한 예방을 위해 피임교육을 강화하고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낙태를 금지한 형법 270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에 대비해 이미 모자보건법으로 태아의 생명권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까지 허용 범위를 넓힌다면 자기낙태죄 조항이 사문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낙태가 공공연하게 이뤄져 인간 생명 경시, 성 윤리의 타락, 물질만능주의와 이런 사상들을 은연중에 부추기는 구조적 모순 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암담하게 하는 저출산 세계 1위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도 낙태율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각종 미혼모 공동주택 및 보호 대책과 위탁 가정을 확충하여 낙태와 해외입양 등으로 사라지는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땅에서 큰 이 아이들은 장차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자 경제활동 인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살률 세계 1위를 기록하고 현실은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죽음의 문화와 직접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 사회에 생명 친화적 가치를 함양시키는 생명문화 고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배아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 등 ‘인간 배아의 생산과 활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좋은 연구도 인간의 생명을 희생시켜가며 진행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종교계와 의학계의 의견을 수렴하며 조정해나가겠습니다.

인간배아 복제에 대한 세계 각국의 반응은 반대쪽으로 기울고 있는 추세임을 알고 있습니다. ACT사가 인간배아 복제에 성공한 이후 미국 정부에서도 '소중한 생명을 파괴하기 위해 또 다른 생명을 키워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고, 영국에서는 복제배아를 자궁에 착상시킬 경우 최고 1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 입법안을 발표하는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금지하는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내에서도 배아 복제 문제는 생명윤리, 난치병 치료 목적을 위한 환자들의 인권문제 등이 결부되어 있어 전문가들 사이에 치열한 논쟁과 이론이 있습니다.

인간 배아 복제기술에 대한 법적 규율 문제는 생명공학의 발달 상황을 고려할 때 시급한 과제이기는 하나 그 행위의 결과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사회적, 윤리적 파장과 과학자의 연구의 자유와 인간 배아 연구의 유용성 등을 고려할 때 간단하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점에서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 배아 복제를 포함한 인간 배아 연구에 대한 법적 논의는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주제임에는 분명합니다. 인간 배아 연구와 같은 새로운 전문 영역에 대한 법적 논의는 거의 예외 없이 윤리적 논의와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고 법적 논의에 있어서는 우선 규율의 대상이 기존의 법체계에 의하여 어떻게 파악되고 있는지, 또한 어느 부분이 규율되고 있고 어느 부분이 규율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대상입니다. 이러한 논쟁이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과학자들은 과학의 유용성과 효율성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윤리적·법적·사회적 문제점들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종교인들은 종교적 원칙과 추론에 의한 논리보다는 실제 현실에서 행하여지는 과학에 대한 깊은 이해와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한 해결 가능한 규율방안을 공동으로 탐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리를 상실한 과학은 마치 브레이크 없이 비탈길을 질주해 내려가는 덤프트럭과도 같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인간생명을 목적적 존재로 보지 않고 치료나 연구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인간배아실험의 범위와 연구기관선정을 결정할 때 현재 대부분의 담당 기관은 생명공학이나 과학자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기관 내의 인사만으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며, 외부인사라도 종교계나 시민단체가 추천한 분들이 선임되는 것이 공평한 선임이라고 생각되어 생명윤리와 안전을 대변해낼 수 있는 이들이 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명시하겠습니다.

언론의 자유

5. '언론사 사장의 낙하산식 임명금지 등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명박 정부 하에서 자행된 방송장악과 언론인 불법사찰 등에 대해 반드시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당하게 해직되고 징계 받은 언론인의 복직 등 원상회복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YTN, KBS 등 공영, 준공영 방송에 대한 지배구조를 혁신하여, 방송장악, 언론인 불법사찰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사 및 사장 선임시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이사회 구성 시 여야 동수 추천을 의무화하고 중립적 이사를 선임하는 등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민주적 운영이 가능하고, 정치적 독립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언론이 본연의 임무인 비판적 기능을 상실하여 정치권력과 거대재벌들의 잘못에 침묵함으로써 심각한 민주주의 후퇴를 가져왔습니다.

평화

6-1. '남북 간의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평화-경제-안보가 선순환하는 남북관계를 만들어 한반도에서 평화와 공존의 문을 열 것입니다. 그 하나의 축은 남북경제연합 달성이고, 다른 한 축은 '한반도 평화 구상' 실현입니다. 남북경제연합은 경제 분야에서 먼저 사실상의 통일을 이루겠다는 구상입니다. 인수위 시절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것을 시작으로 대화를 재개한 후 곧바로 10.4 남북정상선언에서 합의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가동하겠습니다. 그를 통해 개성공단 활성화, 금강산 관광 재개, 서해 남북공동어로구역 협상 시작,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 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황해 남-북-중 삼각협력, 동해 철도·가스관 연결을 통한 북방대륙 진출 등을 통해 임기 후반 '남북간 포괄적 경제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한반도인프라개발기구'(KIDO)와 '북한개발투자공사'를 설립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구상'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구상입니다. 한반도 평화 구상은 북핵과 평화체제를 분리하지 않고 포괄적이고 융합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북핵 해결의 3원칙은 '북핵 불용', '9.19 공동성명 준수', '포괄적·근본적 해결'입니다. 한반도 평화 구상을 위해 인수위 시절 북한에 특사를 보내고, 대통령 취임식에 북한 인사를 초청하며, 취임 후 여름까지 한미·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해 '한반도 평화 구상'을 조율하고, 이를 북한의 정상과 합의하겠습니다. 이어 6자회담 참가국들과 조율을 거쳐 취임 2년차인 2014년 상반기에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6개국 정상선언'을 도출해 내겠습니다. 이것이 '한반도 평화구상'의 로드맵입니다.

6-2. 현재 '경색된 남북 관계'를 풀어갈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수위 시절 대북 특사 파견을 시작으로 대화를 재개하겠습니다. 남북대화과 교류·협력을 다시 시작하는 데에는 특별한 돌발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한 전제조건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 금강산 피격 사건 등에 대한 해법은 모색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대화 시작의 전제조건이 되면 대화를 시작할 수도 없고 따라서 해법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대화 자체를 단절함으로써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만 달리게 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인수위 시절부터 남북대화를 시작해 상호 신뢰를 쌓고, 대화 과정에서 친안함·금강산 등을 논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해법을 찾을 것입니다. 취임 첫 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3차 남북 정상회담은 그러한 대화의 과정 중에 성사될 것입니다.

6-3. '통일을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역대 정부의 통일방안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입니다. 이 방안은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의 3단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화해협력을 추구하면서 남북연합으로 진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통일방안입니다. 역대 정권은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등을 합의했는데 이러한 합의를 존중하고 계승 발전시켜야 합니다. 저는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남북연합을 만들고 이미 역대 정권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당면해서는 '남북경제연합'을 만들어야 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남북경제연합은 남북연합 중 경제 분야에서 먼저 사실상의 통일로 나가겠다는 구상입니다.

사실상의 통일이란 법, 제도의 통일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남북교류와 협력을 활성화시켜서 통일과 다름없는 상태를 먼저 만들자는 것입니다. 저는 경제분야에서 먼저 사실상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남북경제연합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러한 저의 통일정책은 통일은 단기간에 이뤄지기보다는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과정으로서 통일'이라는 개념을 반영한 것입니다.

7.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여정부의 해군기지 건설 결정으로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해군기지는 해양에 관한 우리의 안보 이익을 위해 필요합니다. 2007년 해군기지가 국회에서 예산 통과될 때는 '민군복합의 기항'이라는 위상이 설정됐었습니다. 민항이 중심이고 군항은 모항이 아니라 필요할 때 임시로 귀항해서 보급 받고 장비를 정비하는 용도의 군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민군복합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상 군항 중심으로 변질됐습니다. 또한 제주도민들과 강정마을 주민의 동의를 얻는 민주적인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강요되었습니다. 사회적 갈등 비용을 제주기지를 강행해서 얻는 이익보다 더 크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사를 일단 중단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안보 이익과 제주도민들이 바라는 방향이 조화되는 쪽으로 사업을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에너지

8.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하시겠습니까?

4대강사업은 그릇된 신념에 의해 진행된 무늬만 녹색인 토목공사이며, 생태계교란·녹조현상·농지범람·물고기 폐사 등 환경재앙 공사입니다. 또한 임기내 성과를 위해 무리한 추진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실공사이며, 졸속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부정부패·입찰단합 등 대표적 혈세낭비 공사입니다.

새 정부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시민사회·전문가 참여하는 '하천 토건사업 국민검증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재앙, 부실공사, 국민안전위협, 입찰단합, 혈세낭비 등 문제점에 관하여 철저한 검증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정조사, 특별검찰제, 구상권 청구 등을 검토하고 청문회를 통하여 국민적 의구심 해소하는 과정도 진행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수변지역의 보호를 위하여 청부악법인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4대강사업 이후 예상되는 수변지역 환경파괴 개발 사업의 확대를 저지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실제적인 복원을 위한 '4대강 복원본부' 설치하겠습니다. 검증위원회의 결과보고에 근거하여 부실공사 보의 철거 방안 검토, 복원과 친환경적 개선 및 관리 대책을 수립할 것이며, 녹조 대책, 습지 복원, 각종시설물 자연 생태형으로 변경, 하천구역 내 기존농업지역은 전면 유기농으로 유지, 순차적 재자연화 계획을 수립 할 것입니다. 특히 4대강사업에 반대하여 배제되고 좌천된 전문가, 연구원, 공무원 구제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대규모 국책사업 진행시 지속가능평가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타당성조사제도 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경제성과 사회성, 환경성을 통합해서 대규모 토목사업에 대한 사전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거시적 관점에서 국토이용계획과 국토보존계획을 국토관리계획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은 개발과 성장만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모순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 사례이며, 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자리 잡은 가치를 철저히 성찰하고 전복시켜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4대강 사업은 하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토목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무자비하게 자행된 토건사업입니다. 이로 인해 죽어간 4대강과 주변 생태계는 이명박 정부가 만들어 놓은 전시성 4대강 강변의 생태공원처럼 생태하천을 콘크리트로 만들 수 없는 건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개발과 물질만을 지향하는 성장 중심주의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생명'과 '평화'와 '공존'이라는 생태적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 ‘핵발전소 확대정책 중단 및 탈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탈원전을 해야 한다고 결심한 이유는 무엇보다 사람이 먼저이며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원전은 후쿠시마 사고에서 보듯이 안전하지 않을 뿐더러 처리 비용을 감안하면 경제성도 없습니다. 미래세대에게 불안과 경제적 비용을 떠넘기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에너지입니다. 이웃나라 일본 뿐 아니라 독일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 합니다. 저는 신규원전을 건설하지 않고, 설계수명을 다한 노후원전은 안전한 폐로절차를 밟도록 할 것입니다. 탈원전은 에너지수요관리와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를 통해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목표입니다.

전력수요관리와 안정적 수급을 위하여 전체 53%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력요금을 정상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과소비형 산업구조를 에너지저소비형 산업구조로 바꾸어갈 것입니다. 남북경제연합 공약에서 밝힌 ‘사할린 가스관연결’ 등을 통해 브릿지 에너지원 개발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확대는 에너지의 97%를 수입하는 우리나라가 에너지자립을 할 수 있고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2030년까지 에너지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할 수 있게 대규모의 투자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전환이 우리 경제구조 뿐 아니라 삶의 양식까지 바꾸는 ‘3차산업혁명’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경제

10. 귀하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경제철학’은 무엇입니까?

자유방임의 원칙에 기반을 둔 경제적 자유주의는 점점 이론적 설득력을 잃고 있으며, 특히 세계적으로 확산된 금융위기로 인해 신자유주의에 대한 회의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단순히 정치적 민주주의가 아닌 경제 영역의 민주주의 내지 민주화라고 할 때, 자유주의는 경제 영역에 대한 민주주의 원리의 적용을 끊임없이 제한하는 논리를 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유주의 경제는 결과적으로 여러 선진국 사회에서 그동안 사회복지의 축소, 높은 실업률, 부의 편중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현실에서 단순히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장밋빛 전망이 아니라 ‘노동하는 인간’의 관점에 선 노동의 민주화와 거대시장 권력에 대한 적절한 제어를 구상해 보겠습니다. 제가 대통령 선거 슬로건을 ‘사람이 먼저다’라고 정했고 복지국가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11. 귀하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FTA가 한미 간에 비준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FTA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국가 간의 조약으로써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FTA 조항 가운데서는 한국 사람들이 걱정하는 독소조항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조항들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 재협상을 통한 수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FTA 상으로도 어느 한 나라가 그런 재협의를 요구를 하면 그 사항에 대해서 재협의하게끔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 그 조항에 근거해서 미국 측에 재협상 요구할 계획입니다

12. ‘공공부문(교통, 의료, 수도, 전기 따위)의 민영화(선진화)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기업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생활수단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효율성, 책임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기업의 민영화에 따른 장점에도 불구하고 가격인상에 따른 국민부담의 우려와 재벌의 경제독점 심화, 리스크 관리의 책임성 약화 등 문제점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선진국 사례연구 및 그간의 실패 사례 분석 등 사전 대비와 사후 관리 정책 등을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강행된 공공기관의 민영화 정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13. 귀하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핵심적인 정책’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실현방안’은 어떤 것들입니까?

사회보장 정책과 어떤 지점에서 연결되며,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복지정책으로써의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까?

돈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담보하는 경제로 나아가자는 경제민주화와 사회복지, 이제 단순한 하나의 의견이 아니라 온 세계가 직시해야 할 시대적 당면과제이자, 우리사회에 꼭 필요하고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때문에 저는 후보수락 연설을 통해 언급한 5대 분야 중 경제민주화위원회와 복지국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가와 일반시민이 소통하며 관련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의 양극화,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경제민주화와 보편적복지가 매우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나뉘어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는 노동자, 대형마트와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해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보편적 복지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하며,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공정한 1차 소득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보편적 복지

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과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하도록 하여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노동자 보호

14.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최저임금 현실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4-1. 최저임금 현실화

2012년 기준 최저임금수준은 4,580원이고, 올해 6월 31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2013년 최저임금수준은 4,860원으로 한 끼 점심값도 되지 못합니다. 이 액수는 일본의 1/3에 불과하고 법정 최저임금을 실시하는 OECD국가 19개국 중에서 16위에 해당할 만큼 낮은 수준입니다. 현행 최저임금수준은 노동자 평균 정책급여액의 약 3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는 법정 최저임금수준이 2017년에는 ‘전체근로자 평균 정책급여의 50%’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누차 강조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나 청소를 하는 여성노동자의 한 끼 식사 값은 되어야 합니다.

물론 2013년 6월로 예정된 최저임금위원회의 협의는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2014년 기준 최저임금액수는 이명박 정부 시절 평균인상수준인 2% 보다는 훨씬 높아야 할 것입니다. 저의 공약에 따르면, 노동자 평균 정책급여가 매년 5% 인상한다고 가정할 때, 2017년 최저임금수준은 약 6,5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더 중요한 문제는 전체 노동자 중 법정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분 들 또한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엄격한 근로감독과 노동행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최저임금 지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영세업체와 자영업자를 위해 ‘대위변제(국가가 먼저 지급 후 해당기업이 나중에 변상)’제도 등은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14-2. 동일노동 동일임금

경영여건이 어려워지고 경쟁이 더욱 격화되면서 기업간, 고용형태간, 학력간, 성별간 차별과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일업무와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기업소속에 따라, 고용형태에 따라 전혀 다른 임금이 지급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 차별금지 헌법적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노동시장은 차별이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과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을 명확히 하는 법제도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근기법에 차별금지 내용에 고

용형태를 포함하는 것은 물론, 포괄적인 차별을 금지하고 격차해소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전국민 고용평등법’을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15-1. 고용 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자리와 관련하여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고용없는 성장’ 시대에 나쁜 일자리만 증가하고 좋은 일자리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꿔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정임금, 근로기준법 준수, 그리고 4대 사회보험 적용을 엄격히 준수하는 ‘일자리 최소기준’을 세워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과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고, 환경친화적 생태산업 지원, 사회적 경제 활성화, 미래성장동력 육성, 강소기업의 중견기업화 등을 통해 더 많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시간노동체제에 길들여진 대기업에서 노동시간단축과 교대제 개편을 통해 청년세대와 일자리를 공유하는 한편, 정리해고 요건 강화와 정년 연장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청년실업문제는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의 청년고용 의무할당제, 세대융합형 창업지원 및 세대공존형 일자리나누기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15-2. ‘해고요건 강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진중공업과 쌍용차사태를 통해 일방적 정리해고가 얼마나 큰 문제를 발생시키는지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소위 ‘경영상의 사유에 대한 해고’라는 정리해고에 대한 법제도적 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근로기준법(이하 근로법) 24조(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등)가 무분별한 정리해고를 감소하는데 기여하기 보다는, 오히려 경영상의 사유를 빌미로 정리해고를 남발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정리해고는 노동자로서 해고를 당할 만한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고 일신상의 사정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오로지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노동자의 생존권이 중대하게 위협을 받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큼니다. 따라서 정리해고로부터 노동자 보호를 위하여 정리해고 유효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부당한 정리해고 남발에 대한 법제도적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기업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만 정리해고가 허용하는 엄격한 정리해고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둘째, 해고 회피 노력을 충분히 선행하고 노조, 혹은 노동자 대표와의 협의를 제대로 하도록 절차를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정리해고 이후 경영이 호전되어 신규채용을 할 경우에는 정리해고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넷째, 기업의 정리해고 회피 노력에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16-1. ‘외주용역업체 노동자의 차별시정청구권 부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사회경제적 양극화이고, 그 중심에 비정규직의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임노동자의 약 절반에 달하는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규직과의 차별해소와 격차축소는 물론, 일자리의 최소기준을 보장하고 고용에 대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해 파견법상 허용대상을 제한하고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에 대해 엄격한 고용의제를 적용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용자사업주와 고용주가 분리되어 있는 계약관계의 허점을 보완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원청(사용) 사업주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16-2. 외주, 용역, 도급 등 간접고용에 대한 ‘원청 사업자의 사용자 책임 인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접고용이건 간접고용이건 비정규직 근로자가 일하면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차별시정 신청주체를 해당 개인을 넘어 노동조합까지 확대하고 기간 및 비교대상을 넓혀야 합니다. 이에 따라 외주용역업체에 속해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도 사용자사업주에게 차별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합니다.

17. 노동권의 보장을 위해서는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법적차별과 경제적인 압박 제어,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업무방해죄 폐지,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 경찰 등 국가기관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이 존속하는 한 인간은 노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노동권은 인권의 영역에 속하며 노동자에게 단결권, 단체협상권, 단체행동권은 양도할 수 없는 기본 권리에 속합니다. 정의는 가난한 노동자의 권익이 국가에 의해 적절하게 보호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며 사회의 공동선에 가장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가난한 노동자들을 위하는 것이 곧 국가를 위하는 일이고 정의의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노조결성이나 가입은 노동자들에게 주어진 자연적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는 이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하며 부정하거나 폐지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면서 사용자들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행사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해당 노동자에게 보상을 요구하거나, 재산권의 행사와 영업의 자유를 핑계로 실질적으로 노조활동을 탄압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손해 가압류 및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 책임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노조의 쟁의행위에 있어서 반사회적인 폭력이나 파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민·형사책임을 부여해야 합니다. 인적범위의 제한을 강화하여 신원보증인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 면책해야 합니다. 배상책임 범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와 직접적 인과관계를 갖는 통상적인 손해로 제한하며, 영업손실로 인한 손해 및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는 제외해야 합니다. 노동분쟁과 관련한 가압류 금지 특례를 도입해야 합니다. 쟁의행위 관련 각종 형사처벌제도를 폐지하고 업무방해죄 적용을 금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사용자의 공격적 직장폐쇄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보완해야 합니다. 또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노동권의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